■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5.6.4.>

지도등 또는 측량용 사진의 국외반출 허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아래참조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국적	여권번호
	주소	
반출 사항	반출지	반출일
	반출목적	

신청내용

측량성과의 종류	도엽명	도엽별 일련번호	단위	수량	비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측량성과의 국외반출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1. 보안각서 2. 여권 사본(외국인만 해당합니다) 3. 반출할 내용물(반출할 내용물이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간행한 지도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수수료: 2,000원
처리기간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률」 제16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에 따른 경우: 10일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단서 및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체를 구성하여 결정하는 경우: 60일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접수	→	처리부 등재	→	관계기관 협의	→	보안심사위원회 심사	→	기안・결재 (원장)	→	관인 날인	→
신청인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지리정보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